

1. 개정이유

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주체 및 운영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“위탁기관”)으로 위탁함
- 나.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위탁·운영하는 위탁기관에 대해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의무와 승인 절차 명확화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전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,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(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21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“위탁기관”)에 위탁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이 부실할 경우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(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“위탁기관”)에 위탁한다.</u> <u>②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<u>③ 위탁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<u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이 부실할 경우 위탁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</u>

<u>제17조</u> (생 략)	<u>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제18조</u> (현행 제17조와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540